posco
포스코퓨처엠

녹색구매 정책
(Green Procurement Policy)

최종 수정일	'24. 05. 31	최초 제정일	'23. 04. 28
Rev.	1	표준번호	-
담당부서	상생협력섹션		
검토자	설비자재구매그룹장		
승인자	대표이사 사장		

목적

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이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적용범위

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 포스코퓨처엠 전 사업장, 출자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.

정의

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**'녹색구매'란 원부자재·집기비품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·공급·유통·후처리 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구매계약 및 공급망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구매 활동을 말한다.**

2. **'녹색제품'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.**

   가.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정부공공기관 방침에 따라 그 친환경성을 인증 받았거나 그러한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

나. 포스코 그룹 내 녹색구매 인정 기준(GP등급)에 해당되는 제품

GP 등급*	요약	해설
GP1	환경마크 물품	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하는 환경마크 인증제품
GP2	GR마크(Good Recycled Mark) 물품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재활용 인증제품
GP3	에너지 절감형 물품	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에너지 효율표시 1~2등급 제품,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,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
GP4	유해물질 6종 저감 물품	납, 수은, 카드뮴, 크롬, PCB (polychlorinated biphenyl), 석면 등 유해물질 저감물품
GP5	폐기물 저감구매	포장단위 경량화, Refill, 용기회수 등 폐기물 저감물품
GP6	기타 (난연성, 외국 환경 Label)	난연성 물품, 폐원자재를 활용한 재활용품, 외국의 환경 Label 획득 등 기타 친환경성이 인정 되는 물품
GP7	친환경성 고려 필요 물품	친환경성 고려 필요 (환경규제준수 등) 물품

(*GP 등급 : Green Purchase 등급, 포스코 그룹 내 녹색구매 인정 기준)

기본원칙

1. **원부자재 조달, 공정, 운영, 물류유통, 폐기물 처리 등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한다.**
2. **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에서의 자재 구매 활동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 업무에서 녹색구매를 실천한다.**

실행방안

1. 녹색구매 적극 권장

-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, 자재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.
- 시장에 관련 인증 제도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이유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,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,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,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.

2.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

-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, 녹색제품 및 녹색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,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.
-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.

3. 공급망 내 녹색구매 장려

-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열회사·협력업체·공급사·거래 상대방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, 구체적으로 녹색구매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에 고려한다.